

4. 시설출입이용권

㉠ 회원권확인 청구(골프장)

원고는 피고의 1좌의 개인회원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시설출입이용권확인등 청구(골프장)

1. 원고는 2011. 9. 10.자 정리회사 ○○칸트리클럽(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칸트리클럽)회원 가입계약에 의한 같은 ○○칸트리클럽의 회원용 시설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원고 소속의 임직원 4명이 그 회원으로서 위 회원용 시설에 출입,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골프장 회원권의 법률적 성질

예약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회원권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퇴회할 때에 청구할 수 있는 예약금반환청구권과 골프장 시설의 우선적 이용권, 정례회비 및 기타 요금 등의 납부의무를 포괄하는 구체적인 채권관계라 할 것이다. 클럽의 회칙상 회원에게 시설출입증을 발행·교부하여 주도록 되어 있고, 또한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골프장 시설에 대한 출입·우선적 이용권이 배제되고 있다면, 이의 발행·교부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있고, 시설출입증의 발행·교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출입증의 발행·교부청구권에만 미치므로, 별도로 골프장 회원으로서의 시설출입·이용권의 존부확인도 구할 수 있다.(1987.7.29. 86가합2350)